

2021. 4. 13.(화) 10:00

제287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4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 금875백만원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향유를 위하여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 달성문화재단 10주년을 맞이하여 달성군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 한 달성100대 피아노,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질적 양적 다양화
-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 생태계 확대 지원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관명 : (재)달성문화재단 ○ 대 표 : 김문오 ○ 일반현황 :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875백만 원 (군비 875백만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1 예산액</th><th rowspan="2">2021 추경 요구액</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 비</th><th>시 비</th><th>군비</th><th>기 타</th></tr> <tr> <td>합 계</td><td></td><td>850</td><td>875</td><td>875</td><td></td><td></td><td>875</td><td></td></tr> <tr> <td>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td><td>1~12월</td><td>300</td><td>450</td><td>450</td><td></td><td></td><td>450</td><td></td></tr> <tr> <td>달성 100대 피아노</td><td>10월</td><td>0</td><td>100</td><td>100</td><td></td><td></td><td>100</td><td></td></tr> <tr> <td>달성 대구현대미술 제</td><td>9~10월</td><td>400</td><td>200</td><td>200</td><td></td><td></td><td>200</td><td></td></tr> <tr> <td>하빈 행복생활문화센 터 운영</td><td>5~12월</td><td>0</td><td>75</td><td>75</td><td></td><td></td><td>75</td><td></td></tr> <tr> <td>예술자치구역</td><td>1~12월</td><td>150</td><td>50</td><td>50</td><td></td><td></td><td>50</td><td></td></tr>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1 예산액	2021 추경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시 비	군비	기 타	합 계		850	875	875			875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12월	300	450	450			450		달성 100대 피아노	10월	0	100	100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 제	9~10월	400	200	200			200		하빈 행복생활문화센 터 운영	5~12월	0	75	75			75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50	50			50	
구 분	사업 기간	2021 예산액	2021 추경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시 비	군비	기 타																																																																					
합 계		850	875	875			875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1~12월	300	450	450			450																																																																						
달성 100대 피아노	10월	0	100	100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 제	9~10월	400	200	200			200																																																																						
하빈 행복생활문화센 터 운영	5~12월	0	75	75			75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50	50			50																																																																						
출 연 필요성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 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부서 의견 (총평)	○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 3. 25. ~ 6. 22.)

- 2020년(2019년 실적) 경영실적 평가결과 : A등급(91.79점)

평가분야	평가배점(%)	평가점수	비고
지속가능경영	30	27.89	• 리더십 지표 • 전략 지표 • 운영 적절성 지표 • 인사·조직 지표 • 재무관리 지표 • 예산관리 지표
경영성과	40	34.75	• 사업지표 •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 고객만족 지표
사회적가치	30	29.15	• 일자리 확대 지표 • 사회적 책임 지표
총 점	100	91.79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2021년 출연금 875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

- 2021 달성 100대 피아노등 자체사업비등 875백만 원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9년 결산액	2020년 이월금 활용	2021년 당초 예산액 (A)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 (B)	부서 검토액 (C)	증감 (C-B)	당초예 산대비 증감액 (C-A)
자체사업비	1,006	650	850	1,725	1,725	0	875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0	0	300	750	750	-	450
달성 100대 피아노	529	650	0	100	100	-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361	0	400	600	600	-	200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0	0	0	75	75		75
예술자치구역	116	0	150	200	200	-	5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문화재단				전화번호	053.659.4271	
					홈페이지	www.dsart.or.kr	
설립근거	민법제3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연혁	2011.05.17. 등기						
임원 (21.3.26.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			재임기간	
	대표이사	서정길	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2020.8.20.~2022.8.19	
	비상임이사	김철식	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도원길	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이치우	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김정화	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생활음악)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전유진	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			2020.8.23.~2022.8.22	
	비상임이사	한대곤	한창실업(주) 사장			2021.3.26.~2022.8.22	
	비상임이사	표준식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재임기간	
	감사	도창곤	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			2020.8.23.~2022.8.22	
	감사	김재성	달성군 문화체육과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20.12.31 기준	자산	9,110백만 원
	예산액	4,213	4,866	6,692		부채	1,727백만 원
	지자체 지원액	3,190	3,393	5,437		자본	7,383백만 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출연금, 민간위탁금 등)

II. 검토의견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재)달성문화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875백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임.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4억5천만원,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군 대표 문화 행사인 달성100대 피아노와 달성대구현대미술제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3억원, 생활문화 생태계 확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예술자치구역 사업에 5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인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함.
- 올해는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1등 문화 도시를 만들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더 높이기 위하고자 함으로 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이견은 없음.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세출구조 조정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 등 군민의 수혜도와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 국·시비 보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등을 추가세입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857,000	813,000	44,000
일 반 회 계		848,670	804,900	43,770
특 별 회 계		8,330	8,100	23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894	2,740	154
	의료급여기금	752	694	58
	기반시설	118	110	8
	치수사업	4,564	4,555	9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57,000	813,000	44,000	5.41
일반회계	계	848,670	804,900	43,770	5.44
	지방세수입	196,872	193,866	3,006	1.55
	세외수입	37,284	34,437	2,847	8.27
	경상적세외수입	24,770	24,761	9	0.04
	임시적세외수입	8,067	5,199	2,868	55.1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46	4,476	△30	△0.67
	지방교부세	143,660	143,624	36	0.03
	조정교부금등	32,478	32,478	0	0
	보조금	345,183	337,096	8,087	2.40
	국고보조금등	233,387	229,409	3,978	1.73
	사·도비보조금등	111,796	107,687	4,109	3.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3,191	63,398	29,793	46.99
특별회계	계	8,330	8,100	230	2.84
	세외수입	120	70	50	71.04
	경상적세외수입	37	39	△2	△6.03
	임시적세외수입	83	31	52	170.45
	보조금	604	604	0	0
	국고보조금등	483	483	0	0
	사·도비보조금등	121	121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04	7,425	179	2.42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57,000	813,000	44,000	5.41
일반회계	계	848,670	804,900	43,770	5.44
	일반공공행정	51,255	51,151	104	0.20
	공공질서및안전	3,174	2,911	263	9.03
	교육	11,179	11,101	78	0.70
	문화및관광	60,415	34,356	26,059	75.85
	환경보호	25,966	25,959	7	0.03
	사회복지	324,668	317,853	6,815	2.14
	보건	20,625	20,358	267	1.31
	농림해양수산	57,741	56,039	1,702	3.04
	산업·중소기업	3,715	3,708	7	0.19
	교통및물류	115,273	103,996	11,277	10.84
	국토및지역개발	63,819	63,876	△57	△0.09
	예비비	7,010	17,498	△10,488	△59.94
	기타	103,827	96,091	7,736	8.05
특별회계	계	8,330	8,100	230	2.84
	환경	2,894	2,740	154	5.63
	사회복지	500	500	0	0
	국토및지역개발	435	426	8	1.97
	기타	4,500	4,433	67	1.52

■ 조 직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57,000	813,000	44,000	5.41
일 반 회 계	계	848,670	804,900	43,770	5.44
	본청	771,139	729,020	42,119	5.78
	기획예산실	26,256	36,640	△10,383	△28.34
	법무감사실	338	335	3	1.02
	자치행정국	80,150	79,766	384	0.48
	자치행정과	58,590	58,476	114	0.20
	세무과	793	645	148	22.99
	징수과	696	689	7	1.01
	회계과	12,046	11,907	139	1.16
	종합민원과	619	613	6	1.07
	정보통신과	7,404	7,435	△31	△0.42
	경제환경국	90,198	84,663	5,535	6.54
	일자리경제과	12,003	7,446	4,557	61.19
	환경과	3,212	3,171	41	1.29
	농업정책과	21,350	20,893	457	2.19
	청소위생과	24,616	24,657	△41	△0.17
	공원녹지과	29,015	28,494	521	1.83
	주민복지국	354,012	340,502	13,510	3.97
	복지정책과	205,641	199,473	6,169	3.09
	생활보장과	42,415	41,927	488	1.16
	희망지원과	67,448	67,033	415	0.62
	교통과	38,508	32,070	6,438	20.08
	건설도시국	145,269	134,499	10,770	8.01
	건설과	82,702	73,560	9,142	12.43
	안전방재과	16,595	16,931	△336	△1.98
	도시과	19,153	18,725	428	2.28
	도시정비과	23,984	22,546	1,438	6.38
	건축과	1,355	1,249	106	8.49
	토지정보과	1,479	1,488	△9	△0.59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정책관광국	74,913	52,613	22,300	42.39
		정책사업과	20,801	15,037	5,764	38.33
		문화체육과	26,596	12,384	14,212	114.75
		관광과	9,390	7,286	2,104	28.87
		교육청소년과	18,126	17,905	221	1.23
	직속기관		38,339	36,338	2,001	5.51
		보건소	29,265	27,269	1,996	7.32
		보건과	15,979	15,400	579	3.76
		건강증진과	13,285	11,869	1,416	11.94
		농업기술센터	9,074	9,069	5	0.06
	의회		2,336	2,371	△35	△1.50
		의회사무국	2,336	2,371	△35	△1.50
	읍면동		36,856	37,171	△315	△0.85
		화원읍	5,684	5,684	0	0
		논공읍	4,463	4,683	△220	△4.70
		다사읍	6,321	6,372	△51	△0.80
		유가읍	4,099	4,114	△15	△0.36
		옥포읍	3,869	3,954	△85	△2.17
		현풍읍	3,949	3,859	90	2.34
		가창면	2,826	2,834	△8	△0.30
		하빈면	2,579	2,604	△25	△0.95
		구지면	3,067	3,067	0	0
특 별 회 계	계		8,330	8,100	230	2.84
	본청		8,330	8,100	230	2.84
		청소위생과	2,894	2,740	154	5.63
		생활보장과	752	694	58	8.42
		안전방재과	4,564	4,555	9	0.20
		도시과	118	110	8	7.38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857,000	813,000	44,000	5.41
일 반 회 계	계	848,670	804,900	43,770	5.44
	인건비	94,399	90,199	4,200	4.66
	물건비	42,428	42,327	101	0.24
	경상이전	429,670	427,614	2,056	0.48
	자본지출	264,546	225,129	39,417	17.51
	시설비및부대비	242,910	205,450	37,460	18.23
	민간자본이전	10,623	9,150	1,473	16.1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660	4,518	142	3.19
	공사공단자본전출금	685	680	5	0.73
	자산취득비	5,666	5,330	336	6.30
	융자및출자	10	10	0	0
	내부거래	1,809	1,809	0	0
	예비비및기타	15,805	17,810	△2,005	△11.26
	예비비	7,010	17,497	△10,487	△59.94
	반환금기타	8,794	312	8,482	2714.54
특 별 회 계	계	8,330	8,100	230	2.84
	인건비	344	343	1	0.25
	물건비	26	26	0	0
	경상이전	480	480	0	0
	자본지출	373	370	3	0.67
	내부거래	6,912	6,750	162	2.40
	예비비및기타	193	129	64	49.73
	예비비	45	39	6	14.98
	반환금기타	148	90	58	64.93

4)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분담금	0	136	136	
회계과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감리비)	210	400	190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1,400	6,200	4,800	보조
일자리경제과	달성군 청년·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130	130	보조
일자리경제과	자동차부품 가공을 위한 MCT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113	113	보조
농업정책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28	524	96	보조
농업정책과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0	80	80	보조
농업정책과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20	296	76	보조
농업정책과	원예시설 자동방제기 지원	0	81	81	보조
농업정책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09	408	99	보조
농업정책과	직매장 지원	0	90	90	보조
공원녹지과	쌍계오거리 교통섬 녹지공간조성	0	50	50	
공원녹지과	벽천폭포조성	500	700	200	
공원녹지과	대니산 정상 전망정자 설치	0	50	50	
공원녹지과	비슬산휴양림 전기차 배터리 교체	0	68	68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0	65	65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200	300	100	
복지정책과	경로당 방역도우미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97	97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200	400	200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497	1,890	393	보조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570	35,744	174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667	6,589	922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2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1,965	2,281	316	보조
복지정책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423	1,756	333	보조
복지정책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004	4,195	191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204	204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장	5	155	150	
희망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476	583	106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11,156	11,813	657	보조
교통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300	600	300	보조
교통과	논공 북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0	1,580	1,580	
교통과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0	313	313	보조
교통과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	1,000	5,050	4,050	보조
건설과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 등	200	400	200	
건설과	화원 본리리 인흥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보상
건설과	화원 본리2리 11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공사
건설과	화원 본리1리 47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90	90	공사
건설과	논공 삼리2리 안씩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공사
건설과	논공 노이2리 마을회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공사
건설과	논공 위천리 위천삼거리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보상
건설과	다사 세천리(279-6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800	2,600	800	보상
건설과	다사 세천리(688-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1,100	500	보상
건설과	다사 서동초교 앞 통학로 개설	300	750	450	보상
건설과	옥포 김흥리 마을회관 앞 진입 도시계획 도로 개설	0	150	150	보상
건설과	옥포 교항1리 126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보상

부서명	사 업 명	2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옥포 본리리 91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보상+ 공사
건설과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1,214	614	보조
건설과	가창 상원2리(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보상
건설과	가창 삼산리(37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850	150	공사
건설과	가창 단산리(80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350	100	공사
건설과	가창 우록리(1423번지선)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300	100	공사
건설과	하빈 감문1리(매낙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150	100	보상
건설과	현풍 상리 350-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350	300	보상
건설과	현풍 상2리(현풍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보상
건설과	현풍 원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20	120	공사
건설과	구지 창리 구지중학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400	400	공사
건설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50	100	50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1,500	2,500	1,000	
건설과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	50	100	50	
건설과	화원 설화리 910-4번지선 도로정비	0	120	120	보상
건설과	논공 금포리 917-2번지선(대진섬유옆) 도로확장	0	300	300	보상
건설과	논공 북리~하리 연결도로 개설	0	100	100	보상
건설과	다사 세천리 887번지선 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	0	390	390	보상
건설과	유가 초곡리 도로확포장	0	100	100	공사
건설과	유가 가태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0	100	100	공사
건설과	유가 유곡1리(짐실) 마을안길 확포장	0	112	112	보상
건설과	군도 3호선(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	0	250	250	설계
건설과	현풍 오산1리 138번지선 마을안길정비	0	250	250	공사

부서명	사 업 명	2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건설과	현풍 대리 645번지선 외 2개소 도로정비	0	100	100	보상
건설과	현풍 대리 848번지선 외 3개소 도로정비	0	350	350	보상+공사
건설과	가창 단산리 755-1번지선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	150	250	100	보상
건설과	하빈 동곡2리 국도 접속도로 가각부 정비	120	310	190	보상
건설과	하빈 동곡2리(마을회관 뒤편) 1142번지선 마을안길 정비	0	110	110	보상
건설과	구지 내리 374-1번지선 외 1개소 마을안길확포장	150	300	150	보상
건설과	구지 창리 농협앞 도로정비공사	0	300	300	보상
안전방재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	0	97	97	보조
안전방재과	스마트 안심택배함 설치	0	70	70	보조
안전방재과	하천편입 미지급 용지	0	50	50	
도시과	설화명곡역 주변 간판개선사업	201	460	259	보조 (국비공모)
도시과	옥포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0	80	80	
도시정비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300	450	150	
도시정비과	옥포 반송1리(133번지선) 농로개설	0	470	470	보상
도시정비과	옥포 반송2리(733-1번지선) 농로개설	0	330	330	보상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1리 농로포장	0	50	50	보상
도시정비과	가창 행정1리(767번지선) 농로개설	0	50	50	보상
도시정비과	다사 문양리(293번지선) 농로개설	0	100	100	보상
도시정비과	하빈 기곡리(646번지선) 농로 및 구거정비	0	70	70	공사
도시정비과	화원 본리리(1098번지선) 관정 및 물탱크 설치	0	100	100	공사
도시정비과	옥포 교항리(2820번지선) 암반관정 설치	0	100	100	공사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020년 국비 30,000천원 포함)	0	60	60	보조
정책사업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시설비)	0	4,900	4,900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2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정책사업과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0	900	900	설계
정책사업과	참꽃케이블카 편입토지 보상	0	1,100	1,100	보상
문화체육과	향토문화제 육성 및 지원사업	0	50	50	보조
문화체육과	달성문화센터 운영비	2,867	3,742	875	
문화체육과	달성100대피아노	0	100	100	
문화체육과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0	75	75	
문화체육과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400	600	200	
문화체육과	예술자치구역	150	200	50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300	750	450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작업용 차량구입	0	58	58	
문화체육과	화원명곡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 및 주차장 조성	0	118	118	용역비
문화체육과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0	5,500	5,500	보조
문화체육과	기타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0	300	300	
문화체육과	화원명곡체육공원 유소년축구장 조성공사	0	887	887	보상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0	3,000	3,000	공사
문화체육과	논공 위천파크골프장 조성공사	0	200	200	공사
문화체육과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0	2,674	2,674	공사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족구장 정비공사	0	300	300	공사
문화체육과	달성국민체육센터 공기조화기 교체공사	0	130	130	공사
문화체육과	가창 옥분리 주차장 조성공사	0	400	400	공사
관광과	마비정 벽화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쉼터 조성	0	100	100	
관광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750	1,340	590	보조 (국비공모)
관광과	레포츠관광 활성화 사업	0	160	160	보조 (국비공모)

부서명	사 업 명	21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80	130	50	
관광과	설화리고분군 발굴조사	0	900	900	
교육청소년과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사업	0	63	63	보조
보건과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소독	0	100	100	
보건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예산성립전 사용)	0	70	70	보조
건강증진과	체외,인공수정시술비지원	442	532	90	보조
농촌지도과	비닐하우스 측창개폐기 설치	67	117	50	
농촌지도과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	0	100	100	
농촌지도과	시설채소 연작장해 해소	0	70	70	
농업정책과	민속소싸움대회 지원	100	0	△100	보조
안전방재과	위천제 잔디광장 조성사업	1,000	0	△1,000	
정책사업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감리비)	1,720	550	△1,170	보조
문화체육과	정월대보름 달맞이 기원제	80	0	△80	
문화체육과	비슬산 참꽃 문화제	250	0	△250	
의회사무국	선진국의회 방문연수	32	0	△32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130억원 보다 440억원(증 5.41%)이 증가된 8,570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049억원 보다 437억7천만원이 증액된 8,486억7천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원 보다 2억3천만원이 증액된 83억3천만원입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30억원, 세외수입 28억4천만원, 특별교부세 3천만원, 국시비보조금 80억8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2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천만원, 잉여금 1억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6천만원 등 총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 취소 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지원경비로 현풍 교통문화파크 조성 40억원,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9억원, 참꽃케이블카 편입토지 보상 11억원,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 55억원, 설화리 고분군 발굴조사 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7건 89억원,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8건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4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6억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5억9천만원 등 총 8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104억8천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억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130억원보다 440억원 증액된 8,570억원으로,
- 세입부문에서는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지방소득세, 보조금 반환수입, 국시비보조금과 2020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신규 국시비보조사업, 당면현안사업 등에 활용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감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지역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변경 계획

- 일반회계 전출금 : 203억원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 637억원
- 수입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84,012,827	84,012,827	0
	· 일반회계 전출금	20,300,000	0	20,300,000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63,712,827	84,012,827	△20,300,000

○ 통합계정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

- 예수금 수입 : 69.1억원
- (※ 이자수입은 0.5억원으로 변경 없음)
- 수입 변경계획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액 : 69.6억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6,962,943	6,800,625	162,318
	· 예수금 수입	6,912,318	6,750,000	162,318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894,200	2,740,000	154,200
	- 기반시설 특별회계	118,118	110,000	8,118
지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6,962,943	6,800,625	162,318
	· 통합계정 예치금	6,962,943	6,800,625	162,318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검토의견

-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등 지역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은 기정 840억원 중 203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여 637억원으로, 통합계정은 총 예치금 68억원에서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6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2021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4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근거, 지원되는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무연고 사망자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6조)
- 권한의 위임, 지원신청,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9조)
- 지도점검,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5.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조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근거, 지원되는 장제급여와 연계하여 무연고 사망자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 제정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6조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9조 권한의 위임, 지원신청,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제11조 지도점검,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달성군의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연고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써
- 그 지원대상(안 제4조)이 무연고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고독사로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마을 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자에게 최소한의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안 제6조)함에 따라 금전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읍·면 행정복지센터·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필요 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

2. 장례업체·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 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 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 군수, 읍·면장은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자 와의관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번호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장례일자					
장례 수행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층 주민·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 성 군 수 귀중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 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

구 분	사 진
빈소(제례실) 사 진	
염 습 (수의 착용)	
입 관 (관 속 안치)	
결과 보고 구비서류	1.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사진(빈소, 염습, 입관 사진) 2. 공영 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1부(장제비 영수증 첨부) 3. 화장 증명서 사본 1부 4. 공설 시설 사용허가증(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부

참고

상위 및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1~15 생략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2(연고자)법 제2조제16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 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4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개정)사유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사용”과 “이용”에 대한 정의 구별(안 제3조제2호)
- “사용자”와 “사용료”의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호, 제5호)
-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9조)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20조)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면제 조항 추가(안 제21조)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22조)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2호의 “사용” 과 “이용” 에 대한 정의 구별
- 안 제3조제4호와 제5호의 “사용자” 와 “사용료” 의 정의에 관한 규정 신설
- 안 제4조제3항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 근거 마련
-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에 대한 조항 추가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관리중인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시설 일부 및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 지역주민들이 센터를 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운영 수입 증대가 기대되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사용대가”를 “이용대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제20조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이용”을 “이용·사용”으로 한다.

제6장(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을 제6장(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으로 하고, 제5장(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을 제5장(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으로 하며, 제4장에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6. 사용허가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2 -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구 조 :
- 면 적 :

신청인 주소 :

성명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사용허가 공유재산의 표시]

소재지 :

사용허가 할 부분 :

위 사용허가 공유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자 달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허가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조건을 정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재산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연간사용료) 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정하되 그에 미치지 않는 경우 월할 계산에 의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1차년도 사용료는 입찰가액(부가세포함)으로 한다.

③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결정 통지한다.

제4조(납기 등) ①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해당 연도 사용기간이 시작되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료의 반환) ①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을”이 재산 사용을 종료한 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② “갑”이 제10조제2호부터 같은조제5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연장, 감면요청) ①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달성군에 책임 있는 사유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을”이 재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책임)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보험가입) “을”은 재산에 대하여 달성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을”은 “갑”이 납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제4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을 인도받은 후 발생한 공과금 등을 체납한 때
4.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을 받아 재산을 사용목적에 이용하지 못할 사정에 처한 때
5. 그 밖에 본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제11조(사용허가취소 요청) ① “을”은 사용허가기간 중이라도 “갑”에 대하여 본 사용허가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이 전항에 따른 취소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일 2월 전까지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그 취소일은 위 서면을 제출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갑”은 납부 받은 사용료에서 제2항에 따른 취소일까지의 사용료를 제한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하되, 그 계산방법은 제3조제1항을 따른다.

제12조(원상회복의무)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을“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에 일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공과금 등의 납부) “을“은 “갑“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금의 부담) 사용기간 만료 후에 “갑“이 계속하여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이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법령 준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본 사용허가가 원만히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허가조건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허 가 자(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인)

수허가자(을)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험료”란 사용자가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 또는 수강료 등으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이용자 ----- ----- --- 이용대가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사용자”란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신 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제20조에 따라 센터 시설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② (생 략)	제4조(관리·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4장 이용
<신 설>

<신 설>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사용

제19조(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사용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대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신 설>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제2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달성군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5.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6. 사용허가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무단으로 전대하는 경우
제5장 위탁운영·관리	<삭 제>
<신 설>	제5장 위탁운영·관리
제19조 ~ 제25조 (생 략)	제23조 ~ 제29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제6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제26조·제27조 (생 략)	제30조·제31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 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4월 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개정사유

-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조항으로 인해 제7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안 제1조 및 제5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2조)
-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반영(안 제5조)

5.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5조 기존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제7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수정
- 안 제5조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항 반영

○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의 뜻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를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란”을 “이란 흡연자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으로,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 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10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5조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간접흡연”이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 ----- ----. 3.-----이란 흡연자가 ----- -----. 4. (현행과 같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라 한다)는 <u>법 제9조제5항에 따라</u>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u>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u> 1. 2. (생략) 3. 「<u>학교보건법 시행령</u>」에 따른 <u>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u> 4. (생략) ②·③ (생략) <u>제10조</u> (생략) <u>제11조 ~ 제15조</u> (생략)	----- 「<u>국민건강증진법</u>」 (이하“법”이라 한다) <u>제9조제7항</u>----- ----- 수 ----- -----. 1. 2. (현행과 같음) 3.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u>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u>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15조</u> (현행 제10조와 같음) <u>제10조 ~ 제14조</u>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